

#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이경락\*

## 논문 초록

국가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더불어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다. 전문직업이 지니는 업무에서의 자율성, 전문성이 타율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직으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초강도의 재제수단인 집단소송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들이 속속 등장하고는 있으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보더라도 공인회계사들의 직업인격과 직업적 정체성의 회복이 없이는 미궁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본 저자는 회계전문직이 다른 전문직업과 차별화되는 전문직업적 특성을 소개하고 성경적 직업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인격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핵심 주제어 : 직업윤리, 부실감사, 집단소송, 직업적 정체성, 노블리스 오블리제**

---

\* 천안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글
- II.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배경
- III. 집단소송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보완제도
- IV. CPA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인격 회복방안
- V. 성경적 인간관을 통한 실질적 직업인격 회복

## I. 들어가는 글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집단간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그간 고도의 지적 기술을 통해 높은 직업적 진입장벽을 형성해온 공인회계사 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규제<sup>1)</sup>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회계전문직의 위상에 큰 손상이 되고 있다.

2003년 12월 17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대기업을 분식회계,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증권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다수 증권투자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무리 사소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초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소송절차법이다(김홍규, 200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에 감사인을 포함하는 것은 책임보험 등으로 보상에 대한 실제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감사인에게 기업경영에 따른 회사의 책임까지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집단소송을 당한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고종권·전규안, 2005).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는 외부감사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과잉 규제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입이 되었는데,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 중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합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 효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곽관훈, 2005). 하지만 외부 감사인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의 부여는 오히려 감사인의 전문가책임을 약화시키고, 전승된 자신들만의 고유한 직업적 정체성마저 해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상돈, 2004). 즉, 외부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은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직업적 존립을 위해 책임위험이 큰 감사업무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장대리, 경영권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인회계사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고유한 기능마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변자제력을 지닌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을 표적으로 소액다수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여지를 주고 있어 남소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공인회계사 개

인적으로는 감사업무를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엘리트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직업의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경제적, 제도적 보완책들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배경과 다양한 보완제도 및 그 한계점에 대해 소개하고 집단소송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배경

### 1. 회계부정 예방과 기업투명성 제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반대와 논의가 있었지만 허위·과장·부실공시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투자한 소액투자자, 채권자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결국에는 도입이 되었다.

이철송(1999)은 증권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여타의 손해배상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므로 민법에 없는 특칙(예, 집단소송제의 도입, 피고의 입증책임, 연대책임 등)을 통해 그 손해를 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증권관련 손해배상은 가해자는 소수의 발행회사이거나 외부 감사인인데 반해 피해자는 수많은 일반투자자이다.

둘째, 증권관련 손해배상은 외부감사인과 피 감사회사의 관계처럼 직접

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세계, 증권관련 전체 손해배상액은 거액이나 피해자인 개인투자자의 손해액은 매우 미미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증권관련 손해배상제도에 집단소송제와 같은 특칙을 둔 것은 자본시장의 참여자들 중 상대적 약자인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보상기능)보다는 기업의 회계부정, 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암묵적 합의를 통한 부실감사의 오랜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현실적인 대안(억지기능)이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증권거래에 의한 손해금액의 산정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유가증권의 취득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특칙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형기(1999)는 미국 증권법상 민사책임규정도 보상기능보다는 억지기능에 초점이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sup> 한편,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회계법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출발점이 되어 이를 기피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경제적 선택(개인사무소로 전환, 중소기업 회계법인의 난립, 보수적 감사의견, 부실기업 감사회피 등)이 오히려 회계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기업가치의 적절한 평가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III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소송경제의 달성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는 막대한 인력과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장기적인

---

2) 불법행위법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보상과 억지라는 양측면으로 파악하는 이론을 보상억지이론이라 한다. 법경제학자들은 주로 억지기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세일, 2004).

분석과 수익창출 모델을 토대로 기업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의 전문적인 투자자 또는 고액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한 허위의 사업설명서나 부실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함으로써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손실금액의 액수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적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는 증권발행기업과 매수인간의 일대일 매도매수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소송도 수많은 투자자와 발행기업 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간의 일대일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소액증권투자자나 법원 모두에게 소송의 비용은 과중하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효익은 미미하여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송경제가 확보된 소액투자자 집단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과 같이 변자제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 3. 세계은행(IBRD)의 요구를 수용

1997년말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차관을 요청하였는데 세계은행은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 사외이사제도, 지주회사의 허가, 감사위원회 및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근로자과견제의 전면적인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린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를 비롯한 회계·금융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이 우리 정부나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압력이 밀려 시행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집단간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 III. 집단소송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보완제도

####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문제점

##### (1) 남소현상과 기업이미지 하락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그간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발행기업이나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로 있던 소액투자자들에게 소송상대방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소송의 제기가 보다 용이해지게 되었으나 이를 남용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할 경우 남소로 인해 법원에게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가져다 주게 된다.<sup>3)</sup> 한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무분별한 소송의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남소문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실제경험에 의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 또는 그 제기사실만으로도 해당기업이나 회계법인에게 대외이미지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이준섭, 2004).

---

3) 이준섭(2004)은 남소의 다양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손해배상 책임체계에는 필수적인 인과관계의 요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미비한데 이것이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남소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증권거래법상의 배상책임규정 중에는 불합리한 연대책임규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연대배상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도 걸러 들기를 기대한다면 역시 남소 야기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셋째, 현행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책임규정에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흠결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인정 여부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 시킴으로써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2) 회계감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화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대책임 및 입증책임과 같은 과중한 책임의 부여는 경험과 명성이 있는 회계법인이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기피하거나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의견구매활동을 하게 되어 감사품질이 저하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법인들에 비해 손해배상 책임이 큰 국내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의 경험이 많은 미국 법무법인을 활용하여 외국투자자들이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 개인사무소나 중소기업 회계법인으로 전환, 기장대리나 경영컨설팅 업무로 전환 등 - 을 할 경우 국내 감사시장이 외국계 대형 회계법인에 의해 잠식당하게 되어 회계법인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 대형 회계법인들이 과중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볼 때, 적절한 수준에서의 책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시장 실패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의 교란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고종권·전규완, 2005).

## (3) 부메랑효과에 의한 자본시장의 외해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행된 집단 소송제를 포함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 부여(기업의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 까지도 감사인에게 부여함)는 감사인이 부실감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위해 피 감사회사에 대한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소송과 손해배상책임의 표적이 된 대형 회계법인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책임을 낮은 경영컨설팅, 장부기장대리 쪽으로 업무를 전향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실패로 연결되어 자본시장의

교란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실패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제도들이 정비될수록 합리적인 투자자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더 많은 투자실패와 더 많은 소송(거품소송)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돈, 2004).

#### (4) 전문가책임 및 직업인격의 해체

전문직업으로서 공인회계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체계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회계전문직으로의 진입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체계를 지속적으로 갱신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보다 필수적으로 수반된다(이경락, 2001).

검증된 회계정보를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회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은 경제발전에 따른 회계보고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증가되어 왔다. 이와 같은 회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책무는 자신들이 소유한 전문적 지식을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뢰회사만도 아닌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즉, 공인회계사는 공공의 이익을 증시하는 공공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변호사, 의사 등 다른 전문가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무거운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계약책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공공성, 전문성,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신뢰관계,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 전문가의 집단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하여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신과 의뢰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해온 일부 공인회계사들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타율적이기는 하나 전문가로의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

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의의를 지닌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본시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축소시키게 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한 의사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인회계사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과 지식을 공공을 위한 봉사 즉, 자본주의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형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고유한 직업적 정체성인 직업인격의 해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보완책

### (1) 합리적인 외부감사제도의 정착

부실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투자한 소액 다수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당사자인 투자자, 가해자인 외부감사인, 법원, 자본시장 등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사시장의 실패 내지는 자본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합리적인 외부 감사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부실감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감사인의 선임과 변경을 피감사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 감사인이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외 이사제, 소유와 경영의 실제적 분리, 외부 감사인의 최소계약기간 보장제도 등이 안정적이고 실제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인회계사 집단의 자율적인 자기규제 방안들 - 자율감리,

감리자료의 확대, 상호감리제도, 자율적인 신분법적 징계기준 마련 등 - 을 마련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전문가책무를 갖도록 한다.

## (2) 공평한 수준의 규제를 위한 법개정

분쟁 당사자들 간에 상호합의 과정을 마련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규(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송에 따르는 엄청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공인회계사가 적절한 배상기금의 일종인 강제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돈, 2004).

## (3) 회계개혁법안의 안착

2001년 10월에 엔론의 회계부정사건은 미국 내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되었다. 이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회계개혁법안인 Sarbanes-Oxley법을 신속하게 제정<sup>4)</sup>하였다. 우리 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2003년 6월 일련의 회계개혁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이 중 상당수는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통과한 회계 관련 개혁법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 i)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와 임직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다.
- ii)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4) 2002년 7월 30일

- iii)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 관련 안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 iv) 비공개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대상에서 제외한다.
- v)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 감사인 으로부터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기업과의 관계상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와 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서 회계투명성이 상당한 수준 보장되는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vi)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8년간 보관해야 한다.
- vii)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증권거래법

- i)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 ii) 불공정 증권거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iii)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iv)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한다.
- v)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vi)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공인회계사법

- i)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 외에 재무제표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회계개혁법을 비롯해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은 나름대로 부실한 국내 회계환경을 적극적으로 개혁<sup>5)</sup>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지지는

---

5) 이 개혁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된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남발과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않는다. 예를 들면, 감사인과 피 감사회사간의 유착을 막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감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였지만 감사인이 의무고체주가 도래하기 전에 회계법인을 옮긴 후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본래의 회계개혁법의 제정취지는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회계개혁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실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유지·보완해 나가기 위한 사후적인 노력과 비용 -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 유지비용,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현실적인 노력, 이해상충으로 인한 수많은 소송의 제기, 법원의 가중되는 업무량 등 - 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은 자본시장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라는 기본원칙보다는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협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왔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보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국가의 특혜성 지원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만을 도모한 나머지 자본시장 참여자들과의 건전한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채권은행들 역시 자본시장의 주요한 자금공급원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기보다는 정부정책 수행자의 역할에만 충실한 결과 은행과산과 자본시장의 교란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익과 무분별한 투자를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의 창달에 기여하지 못했다.

공인회계사들은 희소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 주체들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봉사 - 공익을 위한 봉사 - 라는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실회계를 보증해준 보증자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와해되고 사회전체적인 비효율이 극대화되어 결국은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야 말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개혁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간 통용되어온 기업의 부실회계,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와 같은 총체적인 회계부정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반드시 구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처럼 사회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고도로 정비된 제도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이에 의해 통제받는 주체들의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의 결여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 IV. CPA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인격 회복방안

국가 경제의 총체적 갈등과 위기극복을 위해서 제정된 회계개혁법안(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를 포함해서)의 실질적인 정착과 우리 경제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직업윤리와 사명을 재인식함으로써 해체된 직업적 정체성(직업인격)을 되찾는 것만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전문직업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인격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독교적 인간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V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1.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특성

전문직업으로서 회계전문직이 가지는 특징은 크게 복잡한 지식체계, 공익에 의 봉사,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회계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체계(technical knowledge mechanism) 즉 그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언어구조(specific language structure)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회

계전문직으로의 진입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복잡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회계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체계를 지속적으로 갱신시켜(update) 나가야 하는 인생의 행로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적절한 회계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를 통해 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회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은 경제의 발전에 따른 회계보고기능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증가되어 왔다. 회계전문직은 직업적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도덕적 가치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복잡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sup>6)</sup>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공표한 윤리규정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인 갈등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회 내에 윤리적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전문직의 직업적 특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로 보여 지며 회계전문직의 윤리적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집단소송과 같이 사회적 비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계담당자들은 매우 실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추상적,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뿐만

6) 그러나 가장 최근(1999. 11. 26)에 개정된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에도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는 이미 공표해 놓고 있는 규정인 ① 윤리적 갈등에 대한 해결절차를 명시하거나 ② 공인회계사회 내에 윤리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실을 운영할 것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아니라, 회계담당자들은 윤리적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도 거의 없다. IMF 이후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같은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회계업계의 윤리적 갈등도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회계전문직이 가지는 또 다른 직업적 특징은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신뢰가 중요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회계전문직이 창출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credibility)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PA)의 검증기능은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모든 공인된 전문직업계에서는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본적 목적은 전문직업계의 구성원들에게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케하고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권찬태, 1986). 회계전문직에서도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을 두어 공인회계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높은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견지해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고객과 일반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7)</sup>

## 2. 공인회계사의 직업인격 회복방안

전문직의 또 다른 중요한 직업적 특성은 업무수행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인회계사들이 전문직으로서 가지는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타율에 의해 종속되거나 견제를 받게 된 것(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그간 회계전문가로서의 사회적 봉사책무를 신의성실한 자세로 추구하지 못한 결과라 여겨진다.

전문직의 자율권이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받는 현상은 전문직업으로서의 고

---

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이 1961년 11월 1일에 제정된 이후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 한공회 내규 제2호, 제정 1961. 11. 1, 최종개정 1999. 11. 26).

유한 특성 즉, 그 전문직업의 직업적 정체성(직업인격)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문직업인이 금전적 보수에 집착하여 본연의 직업적 본질을 망각한다면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전문직업인 단체나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경영 분야의 최고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의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학 경제경영 분야의 윤리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경상계열 전공 커리큘럼 내에 직업윤리나 공인회계사의 직업인격과 관련한 과목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담당교과목 강사가 중요성을 두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은 냉정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학의 모든 전공과목에 관련 직업의 직업적 정체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sup>8)</sup>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나 면접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이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9)</sup> 금감위나 공인회계사회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을 달성한 회계법인을 매년 시상함으로써 일반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학회나 국가 기관에서는 대학이나 공인회계사들의 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다년 차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회계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전문단체(회계법인)의 이익과 일

8) 경상대학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회계부정 관련소송이나 사례를 통한 케이스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9) 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의 연수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에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30% 정도 포함하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반국민의 이익이 상충되는 윤리적 갈등관계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공인회계사들이 이러한 윤리적 갈등문제를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다른 전문직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 -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의 이익만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달리 일반 대중의 권익보호라는 특성 - 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인회계사들의 직업적 갈등문제를 우리 사회는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집단소송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단체나 기관(금감위, 전경련,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시민단체 등)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칭 “감사업무 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공인회계사들의 업수상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성경적 인간관을 통한 실질적 직업인격 회복

앞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고도의 전문적 직업군에 속하는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특성과 최근의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상실된 직업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현대 자본주의의 대표적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의 장(자본시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 선택의 과정에는 신뢰할만하고 목적 적합한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정보소유의 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일반 대중을 위해 정보의 편재현상을 해소시키고 질 높은 정보를 자본시장에 유통시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직업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는 기독교적 직업관의 이해(이운재, 2004)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윤리의 재확립이 이루어져야 실천적인 개혁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개혁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인격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은 달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이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진정한 공산주의 인격체의 부재로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공허한 이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즉,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개혁을 시도해온 어떠한 사람도 진정한 공산주의적 인격체 -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극도로 확대된 이상사회에서 의욕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인격체 - 가 아니었던 것이다.

플라톤 이래로 인류가 실현하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붕괴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서비스해야 할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상실은 어쩌면 동일한 맥락 -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회적, 직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맥락 -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신명기 5장 20절).

위의 성경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따라서 거짓 증거를 미워하시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타락한 인간본성 속에는 거짓(그 본질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제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만나기만 하면 거짓증거의 형태로 사탄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거짓인 세상이 진실한 하나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사건이다. 인류는 새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한 이후 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거역과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의)를 자신의 의로 대치한 인생들은 세상의 정의실현이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보람직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의 허무와 사회의 혼란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열매만을 산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은 진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으며 - 어떠한 진정한 제도의 개혁도 타락한 그 본성이 발휘된다면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므로 - 따라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타락하지 않는 본성회복을 가능케 하는 참 아들 안에서 인격회복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요 5:5, 요1 5:12)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진실하신 한 분을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본분인 것이다. 정당성을 확보한 그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라도 그것이 이 한 분보다 더 소중한 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나라의 개혁에 불과할 것이다. 죽고 부활한 영원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만이 참 개혁자이시고 진정한 직업인격 회복을 가능케 할 진실의 원천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종권·전규안 (2005),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1-71,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최종개정 1999. 11. 26).
- 곽관훈 (2005), “외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제도제한의 도입”, 『상장협』, 51, 134-158.
- 권찬태 (1996), 『CPA의 역할과 책임』, 경북대학교출판부, 9-20.
- 김홍규 (2004),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남소의 방지”, 『상장협』, 49, 3-21.
- 박세일 (2004), 『법경제학』, 서울, 박영사.

- 이경락 (2001), “회계전문직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분석적 검토”, 『상장』, 6-9.
- 이윤재 (2004), 『성경속의 경제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78-221.
- 이상돈 (2004), “부실감사책임: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규제연구』, 13, 73-99.
- 이준섭 (2004), “납소문제와 그 대책”, 『진경련』, 474.
- 이철송 (1999),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처우제도의 구조”, 『인권과 정의』, 277.
- 이형기 (1999), “증권거래법상의 민사책임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77.

Abstract

## Guide of the Bible for CPA' Professional Identity Recovery

Gyeong Rak Lee\*

In capitalist(free-market) economy today, CPA'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distribution of good quality F/S information grow on the increase. But Korean CPAs and accounting corporations have confronted serious professional identity loss caused by moral hazard. Foreign exchange crisis(1997) uncovered these old score problems of accounting business world. Recently legal responsibilities on CPAs and accounting corporations committing false audit or imposture are strengthening..

Specially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n relation to stocks and bonds puts pressure on CPAs and accounting corporations to drive down to the bankruptcy and noblesse oblige loss. In opposition to these states government and accounting business world have prepared various complementary measures including accounting reform act, fix of reasonable

---

\* Professor of Cheon An University

outside audit system, ethical education on CPAs, operation of relation office for CPAs falling ethical dilemma and so on.

Though various reform systems exist, the success of reform doesn't depend on these elaborate system. Reforms of personality should go ahead of reforms of system. If so how to accomplish genuine reforms of personality? Only it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died and the Resurrection on Cross like Jesus Christ. Because all efforts and enthusiasm of corrupted mankind yield corrupted all fruit, the only and simple countermeasure of God for hopeless you and I is Jesus Christ, new genuine character,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Key words: Professional ethics, Poor auditing,  
Class action, Professional identity,  
Noblesse oblige